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정영철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손호철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국문요약 |

냉전시절 인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권으로 대별되는 ‘인권 정치’의 수단이었다. 냉전이 붕괴한 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은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오랜 논쟁을 거쳐왔으며, 오늘날에는 인권의 의제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은 한반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입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보편성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현실에 대한 고려 없는 보편주의의 절대화로 귀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역시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금의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획득된 인권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북한에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인권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합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인도적 현안부터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그리고 한반도 인권)의 증진도 좀 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인권, 보편주의, 상대주의, 북한 인권, 한반도 인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SSK)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1-330-B00011).

1. 서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절, 인권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되는 ‘인권-냉전’의 수단이었다. 비록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가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냉전은 이를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남북한 역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되는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상호 체제 대립의 양상을 띠었다.¹⁾ 냉전의 해체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자유권, 사회권에 대한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권 의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남북한 체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해법간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권 역시 권력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엄연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국가간 정치의 반영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동시에 특수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 곧 ‘통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역사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이데올로기적인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특수한 지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확립과정과 오늘날 제기되는 인권 의제의 확장을 살펴보고,

1)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인권 대립은 체제 경쟁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인권 그 자체를 둘러싼 인권관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서보혁, 2009: 161).

제3장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북한의 인권관, 우리사회의 논쟁 등을 통해 살펴보면서 현실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결론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대한 접근이 이상주의적 사고와 주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2. 인권의 역사: 보편적 지위의 획득과 새로운 인권 의제의 등장

1) 인권의 탄생과 보편성 획득의 역사

이샤이에 따르면 고대의 동·서양 사상의 전통에서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이샤이, 조효제 옮김, 2008: 128). 그러나 인권이 구체적인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평가된다(커스틴 셀라스, 오승훈 옮기, 2003: 12). 구체적으로는 자연권 사상가들인 홉스, 로크, 루소 등에 의해 주창된 자연권 사상은 인간의 자연상태에서의 기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자유권과 소유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였다. 즉, 이들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연권은 우주의 통치자인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거나 순수한 우주적 이성인 자연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인간은 이성이라는 자연의 빛을 통해 자연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비환, 2010: 25). 이들의 자연권 사상은 오늘날에까지 인권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²⁾ 자연권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인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³⁾ 특히, 사유재산권(소유권)에 대한 강조는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재산소유

2) 자연권 사상가들의 인권 관련된 주장과 비교에 대해서는 (조효제, 2012: 66)을 참조.

3) 이런 점에서 인권의 논의가 서구의 제1세대 인권을 이념형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근관은 인권 논의가 이처럼 공동체적 차원을 제거하고 오로지 ‘도적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인권,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위치적 우월성을 손쉽게 획득하고 있다고

자로 그 권리가 한정되는 시대적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기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주장되었고, 결국 보편적 인권과 동일시되었다(유홍림, 2010: 83). 따라서 현재의 인권담론의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에는 자유주의가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고대의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인권은 중세 계몽주의의 혁명을 거치면서 하나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자연권에 기반한 인권은 이후 슬한 비판에 시달리면서 현대의 인권 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연권에 반대하는 인권비판은 주로 보수주의와 법실증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현대의 사회과학에 의해 이루어졌다.⁴⁾ 이들 비판의 핵심은 인권이 인간에게 주어질 불변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적 과정에 의해 변화, 발전해왔거나 혹은 부르주아의 개인주의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인권에 대한 부정 혹은 자연권에 기반한 인권 사상의 부정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인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보편적인 이상향이라는 인권의 사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편적 인권의 탄생 역사는 인권 개념의 확장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초기 인권은 자유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하여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권이 중요한 권리로 제기되었고, 이는 냉전 시절의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주요한 인권 논쟁의 지점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1948년 채택된 <유엔헌장>은 전통적 자유권에 무게를 두고자하는 미국과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려는 소련 사이의 논란을 통해 1948년 12월 두 개의 내용을 모두 담은 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민경배, 2001: 312). 이 두 가지 권리는 결국 19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두 개의 규약으로 제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두 개의 규약은 현재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으로서 모두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는 이성으로써 사고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식의 인권 해석을 선호하고, 사회주의자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비판한다(이근관, 2006: 201).

4) 이에 대해서는 (조효제, 2012: 87)을 참조할 것.

사회·경제적 의미로서의 보편적 인권 개념을 선호한다(오수웅, 2010: 463). 일반적으로 시민주적·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이를 인권의 핵심으로 보는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사회주의를 기초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우선적인 인권으로 보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오영달, 2010: 243).

이렇게 보면, 인권은 고대로부터 각 문화권에 인권개념이 내재했다고 할지라도, 근대적 인권은 17세기부터 서구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다라도, 전 세계적인 문화적 맥락에서는 서구적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보편주의 주장 자체가 서구의 특정한 시대적 발상이었다는 것이다(조효재, 2012: 221).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결국 인권의 숭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복잡성의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결국에는 비서구 사회의 특수성 혹은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른 상대주의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⁵⁾

2) 인권을 둘러싼 논쟁: 상대주의의 도전과 발전의 과정

인권의 보편성 확립의 역사는 다른 한편 상대주의 및 근본주의와의 논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상대주의의 도전은 1947년 미국의 고고인류학회로부터 처음 등장했다. 이들은 ‘보편적인 것’은 서방의 가치이고, 인류학은 가치가 문화적으로 상대적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따라서 ‘보편적’선언은 전 세계에 유효할 수 없다는 성명을 채택하였다(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47: 서보혁, 2007: 29-30에서 재인용). 사실, 인권은 ‘어떠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침해

5) 이러한 서구중심성 및 상대주의의 논쟁에 대해서 어빙(Uv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대주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아마도 서구중심성(western-centrism)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 끊임없이 새로운 더 높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Uvin, 2004: 31).

될 수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과 각 사회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들의 규범 속에서 인권이 논의되는 것만이 참다운 인권실현을 보장한다는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관점이 주요한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다(정영선, 2000: 208).

오늘날 인권에 대한 이러한 상대주의 비판은 비서구세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 싱가포르 수장 리관유(李光耀)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서구세계에서 서구 중심의 인권은 비서구세계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⁶⁾ 일반적으로 근대의 인권 개념이 개인에 대한 강조, 권리로서의 자유, 사회계약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면, 제3세계 및 전통사회 및 동양적 인권 사상의 기본 요소는 인관관계 중심의 공동체 강조, 자유보다는 의무를 수반한 도덕, 가족 중심적 사회관 등을 들 수 있다(정영선, 2000: 213). 이러한 비판은 ‘보편적 인권’을 수단으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수행하는 강대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유엔현장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앞두고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대표단에게 “자칫 인권의 원칙을 경솔하게 적용했다간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 타국의 권력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커스틴 셀라스, 2003: 343).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고안되고 기능하는 정치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냉전 시기 공산진영에 대한 서방세계의 우월성을 천명하고 공산진영에 대항하고 또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하기도 어렵다(오수용, 2010: 80). 결국 보편성과 상대성의 논쟁은 인권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을 넘어, 정치-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인권 논의가 자칫 정치의 영역에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6)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선언한 것은 1993년 방콕선언이라 할 수 있다. 방콕선언의 요지는 ‘인권은 원래 보편적이지만 국제적인 규범을 세우는 작업은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틀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과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콕선언은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격화시켰고, 이후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아시아인권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정근식 외, 2004: 제1장).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대주의의 도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비판하는 근본주의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먼저, 문화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보편인권을 강조하는 태도를 도덕적 제국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 다음으로 정치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격한 법실증주의에 기반하여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국가주권론자의 입장이 있다(조효제, 2012: 207).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은 인권을 인간을 ‘추상적 단자’로 상징함으로써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단자들로 구성된 사회구조를 옹호하는 부르주아적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근본주의적 비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토대를 도외시한 채 인권만 주장하면 할수록 인간해방에서 멀어진다고 경고하였다(조효제, 2012: 144). 그렇다고 하여 마르크스주의가 인권에 대한 비판에만 기능을 한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인권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초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념을 전제로 한 개념임을 최초로 밝혔으며, 결국 이러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인권을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긴밀히 결합시키도록 했다(조효제, 2012: 160; 이샤이, 2008: 233-236). 그리고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의 인권 투쟁은 계몽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좁은 의미의 보편주의를 확장하여 넓은 의미의 인권 의식으로 발전시켰다(이샤이, 2008: 266).

위와 같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상대주의의 도전에 대해 도넬리는 4가지의 인권 유형으로 구분한다. 네 가지 유형의 양 극단에는 ‘극단적 보편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가 위치하고, 그 중간에 ‘강성 상대주의’와 ‘온건 상대주의’가 위치하고 있다(도넬리, 박정원 옮김, 2002: 71-75).⁷⁾ ‘극단적 보편주의’는 문화적, 역사적,

7) 이러한 구분은 다음의 4가지 구분과 동일하다. 즉, 첫째, 급진적 상대주의의 시각으로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 기원이라고 보는 극단적인 입장, 둘째, 급진적 보편주의의 시각으로 인권을 포함한 모든 가치들은 전적으로 보편적이며, 문화나 역사적 차이에 비추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될 수 없다는 시각, 셋째, 강한 상대주의의 시각으로 인권은 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문화와 다른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 넷째, 약한 상대주의의 시각으로 보편적 인권을 제1차적인 것으로 보고 문화에 따른 수정은 일정

지역적 차이에 관계없이 인권 및 도덕적 가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이며, ‘극단적 상대주의’는 모든 도덕적 가치(인권 포함)는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 문화 및 정치경제적 상황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강성 상대주의’는 인권 및 모든 가치는 원칙적으로 문화적 특수성에 종속되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온건 상대주의’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문화적 속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영선, 2000: 212). 물론 상대주의에 있어서도 인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서구식 보편성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당한지, 그것을 타문화에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비서구권의 문화체계 안에 서구식 인권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수용한다면 어떤 형태로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한다(조효제, 2012: 210).

오늘날까지도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상대주의의 도전은 지난 1993년 중국이 주도한 <방콕선언>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오늘날에도 미국과 중국의 인권 논쟁에서 드러난 중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 그리고 지난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국의 문화적 입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주의만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이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의 획일적(uniformity) 실행을 의미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더욱이 상대주의의 입장에서도 인권 그 자체의 보편성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오랜 인권의 역사를 더듬어 가면, 이러한 상대주의적 도전 역시 인권의 보편성을 확립 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제3세대 인권의 등장과 한계

냉전 시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은 서로가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권을 대외

정도 허용된다는 시각이다(김수암, 2006: 157-158).

정책의 도구로 확장함으로써 ‘인권 제국주의’적 성향을 띠었고, 인권을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⁸⁾ 반면, 사회주의 진영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서구의 자유권에 대해서 서구의 사상적 침투와 제국주의적 내정간섭 등으로 비판하였다.⁹⁾ 이러한 동-서 진영의 갈등은 결국 양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인권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의 그리고 상호 연관된 권리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인권의 통합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냉전의 해체가 인권의 보편적 지위 획득에 미친 영향은 기존의 국가규범과 초국가적 규범의 경합에서 후자가 우위에 서게 되는 현상을 노정했고, 결국 인권 역시 국가를 넘어서 초국가적 규범으로서의 보편적 지위로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¹⁰⁾

인권이 냉전의 몰락을 계기로 하나의 불가분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보편적 지위를 공고히 해온 역사는 인권이 결국은 역사적 개념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부단히 확장되어온 것임을 말해준다.¹¹⁾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최근에는 권리와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제3세계의 요구로 인해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기존 두 개의 규약으로 정립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이를

8) 사실,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냉전이 끝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서보혁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인권을 미국의 가치관 수호 및 확산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외교정책에 적용할 경우, 미국의 국익 즉,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서보혁, 2005: 313).

9)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북한과 미국의 ‘인권 논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냉전시절 폴란드 자유노조에 대한 서구의 간섭, 소련 및 공산진영 국가에 대한 인권 압박 등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인권 및 인권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0) 냉전 이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과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라 규정하고, 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중요하며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유권과 사회권의 우위 논쟁을 종식시켰다.

11) 이상훈은 ‘현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을 사실상 그렇게 자연적이지도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으며, 사회 규범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어 왔다’고 지적한다(이상훈, 2005: 218); 이러한 인권의 역사는 인권을 철학적 논의의 대상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아울러 말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은(2008)을 참조할 것.

제3세대 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세대 인권은 선진국에서 향유하는 기본권과 개도국이 누리는 기본권 사이의 간극이 점차 늘어나면서, 집단권리 또는 문화적 권리 개념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인권범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문화적 권리의 주장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압도적인 영향력, 특히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비서구권에서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이샤이, 2008: 403).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발전의 현격한 격차, 평화에 대한 위협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등에 따라 제2세대 인권이 말하고 있는 공유권을 보다 더 확장하기 위한 후진국들의 요구가 집단적인 권리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 3세대 인권이라 할 수 있다.¹²⁾ 즉, 2세대 인권의 공유권이 한 국가 내에서 실현되어 그곳의 모든 개인의 권리가 되어야 하는 반면, 제3세대의 공유권은 여러 국가에 대한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권리는 특히 후진국들에 의해 요구되었던 발전권, 평화권, 환경보호권, 인류유산에 대한 공유권 등이다(민경배, 2001: 319).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제3세대 인권은 국제인권법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유는 평화권과 발전권이 실현되려면 서방 선진자본주의 국가나 군사 강대국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서보혁, 2007: 44). 특히,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이미 승인된 여타의 권리를 열기설기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 내용의 초점과 구체성·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이근관, 2006: 200). 그러나 인권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온 개념이며, 그 보편적 성격 역시 확장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3세대 인권 역시 점차 보편적 지위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¹³⁾ 자유

12) 제3세대 인권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념화된 것으로서 바사크는 이를 ‘연대의 권리’라고 일컫는다. 그는 발전, 평화, 환경, 소통 그리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 유산 등을 누릴 권리를 연대권의 목록에 넣고 있다. 유엔에서 이 범주에 속하는 선언문이 두 차례 나왔는데 <만민의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1984)>와 <발전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등이다(벨렌 필즈, 박동천 옮김, 2013, 84).

13) 조효제에 따르면 이러한 제3세대 인권은 보편인권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문화상대주의에 있어서도 완전한 ‘반인권적 문화상

권으로부터 시작된 인권이 경제와 문화적 권리,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발전과 연대와 평화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이 서구 계몽주의의 산물로 등장했지만, 서구적 전통이 점차 열어지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오늘날 연대권 등의 일부 측면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어도 연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는 사라졌으며, 이로부터 평화권, 환경권, 인도적 구호권 등으로 새로운 권리의 이론적 근거가 도출되고 있기도 하다(조효제, 2012: 97).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인권의 발전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의 인권과 논쟁: 북한 인권관의 특징과 우리 사회의 갈등

1) 북한의 인권관: 상대주의 그리고 부분적 변화

북한은 2002년, 2003년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아동권협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완강한 반발로부터 한발 물러나 자신들의 인권 개선의 의지를 부분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랄프 슈와츠(Rolf Schwarz)가 주장하는 5단계 나선형 모델에서 2-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즉, 부정과 탄압으로 일관하던 데에서 벗어나 전술적인 양보를 취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의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에서의 변화

대주의’는 없다고 주장한다(조효제, 2012: 209).

14) 5단계 나선형 모델은 phase 1: repression → phase 2: denial → phase 3: tactical concessions → phase 4: prescriptive status → phase 5: rule-consistent behavior로 구성된다(Rolf Schwarz, 2004: 200).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서 보았듯이 인권이 보편적 지위를 획득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인권의 인식만이 아니라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편적 지위를 획득해온 과정 역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유럽의 인권 재판소의 설립도 불과 1998년의 일이며, 이는 1950년 유럽 인권 재판소의 설립 이후 개인이 직접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요구되었다(백범석, 2014: 3). 이는 북한의 인권 개선 역시 오랜 시간을 요하며, 현재까지 획득된 인권의 보편적 내용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북한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요구이면서 동시에 인권에 대한 ‘계몽’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인권관, 그리고 사회주의적 인권관 역시 보편적 인권의 확장 및 발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이 성립되기 까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라도 약 3세기에 걸친 논쟁과 갈등이 있었으며, 1945년 <유엔헌장>의 발표에서부터 따지더라도 약 70년간의 오랜 논쟁과 갈등이 거쳐야 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인권관을 ‘특수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인권 역사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관은 논쟁과 갈등의 보편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⁵⁾

북한의 인권관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인권의 상대주의적 입장을 띠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역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단적 상대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궤변의 반동적 본질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서방식인권모델을 내러며 세계를 서방화, 미국화하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재패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데 그의 반동적 본질이 있다’고 인식

15) 이러한 점에서 백범석의 주장은 흥미롭다. 그는 오랜 인권의 역사, 그리고 지역 인권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논쟁과 갈등 그리고 이미 확립된 ‘보편적 인권’과의 긴장 관계를 거치면서 점차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백범석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북한의 인권관 역시 이러한 지극히 보편적인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백범석, 2014).

한다(리광혁, 2010). 이에 맞서 북한은 ‘우리 식 인권’¹⁶⁾을 주장하면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상대주의적 입장과 민족별, 국가별 특수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서보혁, 2006:165). 즉, 개별 국가별로 ‘인권기준’과 ‘보장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형태상으로는 ‘약한 상대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권 기준 자체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강한 상대주의적 시각’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김수암, 2006: 165).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을 정리하자면, 인권을 보편적으로 정의한 후, 그것에 계급적 관점을 부여하고, 자신들은 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부르주아 계급 혹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 반대라는 식의 논리 전개방식을 보이고 있다(서보혁, 2007: 145). 사실, 북한의 인권 개념과 그 내용은 1990년대 이후에야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⁷⁾ 그리고 이러한 인권 개념의 정립에는 김정일의 발언과 인권에 대한 규정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김정일의 초기 인권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인민적성격과 부르쵸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김정일, 1991.5.5.).

-
- 16) 북한이 ‘우리식 인권’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995년 『로동신문』에서 우리 식 인권을 언급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개념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의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인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북한 문헌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 17) 김일성과 김정일의 발언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 인권에 대해 정리된 체계화된 언급이 부재하다. 단지, 1990년대 이후에서야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인권문제 대한 대응에 있는 보인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권의 유린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김정일, 1992.12.21.)

위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는 인권은 자주적 권리이며(보편적 성격), 사회주의에서만이 인권을 올바르게 옹호할 수 있으며(계급적 성격), 오늘날 인권 유린자는 오히려 제국주의자들(반제국주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중요 요소로서 노동 및 생존과 사회복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권을 자유권에 앞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 역시 초기에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제기했으며, 기본적으로 사회권, 그리고 집단주의적 인권, 계급주의적 시각에서의 인권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서보혁, 2006: 106). 그러나 남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할 경우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없이 결사,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법·제도의 반인권성, 노동자들의 경제적 열악성 등을 모두 포함하여 비판하고 있다.¹⁸⁾ 북한은 1957년 발간한 책자에서 인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대중정치용어사전: 213). 이러한 개념 규정은 인권이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갈등이나 대립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1992년 출판한 책자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권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조선말대사전 2: 1696). 이러한 개념 규정은 북한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근거한 인권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계급적 시각, 집단주의의 강조, 기본권 중심의 이해,

18) 북한이 1993년에 출간한 『남조선의 인권실상』(평양: 평양출판사)에서는 남한 인권의 비판 근거로서 유엔, 국제인권그룹,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의 출판물을 들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출판물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주권의 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서보혁, 2006: 160). 특히,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표현은 인권에 앞서 국권 즉, 주권이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라”라고 하고 있다(송재순, 로영, 1995.6.24). 또한, 인권의 대상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인민대중이며,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서보혁, 2007: 144).¹⁹⁾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인권의 주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는 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에 강조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이무철, 2011: 148). 그러기에 “참다운 인간생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만 훌륭히 실현된다”고 주장한다(김정일, 1994.11.1). 이러한 북한의 이해는 인권에 대한 부르주아적 해석의 배경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의 계승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관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가치(계급적 관점)와 주체사상에 근거한 인권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인권이 보편적임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제8조에 ‘인권 존중’의 문구를 추가하였다.²⁰⁾ 북한 역시 인권 분야에서의 변화를 일정한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 북한이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의식주, 보건, 교육 등 인민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체제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서보혁, 2007: 144).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 필요 제공 능력이 약화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인권의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난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서보혁, 같은책: 144).

20) 1998년 헌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추가되었다. 즉, 1998년에는 ‘국가는 ...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는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로 수정되었다.

2) 우리 사회의 논쟁과 현실의 문제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에서 중요한 핵심 문제로 등장하였다. 핵, 미사일 등의 군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등이 새롭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심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인권정책이 주로는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로 취급되거나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북 인권정책은 자유권을 기본으로 한 공세적 접근이었고, 국제화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북한인권의 국제화 못지않게, 북한인권이 국내정치와 대북정책의 도구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의 논쟁을 촉발시켰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인권이 순수성을 벗어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¹⁾ 가장 탈-이데올로기적이어야 할 인권이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갈등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화 및 정치화는 남한 내에서의 진보-보수의 진영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보수-진보 논쟁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인권 갈등은 북한 체제로부터 인권의 문제를 도출하는 입장과 북한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 등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²²⁾ 또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도 북한 체제의 해체로부터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및 점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결국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해법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헬싱키 프로세스가 적대 진영간 상호 체제 존중하에서 공동

21)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임현진과 정영철은 인권, 탈북자 및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진보적 이해 그룹(progressive interest group)과 보수적 이해 그룹(conservative interest group)의 이해관계(interest relations)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Lim Hyun-Chin & Chung Young Chul, 2006).

22) 북한 인권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서보혁(2007: 184)을 참조할 것.

관심사를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결을 추구한 것에 있다고 한다면(서보혁, 2007: 377), 현재 한반도에서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전체제의 청산 및 남북간의 적대관계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북한 인권문제의 부각은 1990년대의 체제 위기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에 부닥쳐야 했던 북한의 현실, 그리고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인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정당화시키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정태욱, 2001: 75), 그리고 북한의 저개발 상황에 비춘 발전권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정태욱, 2005: 58).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보수 진영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을 북한 체제에서 찾는다. 즉,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을 비롯한 제반 위기와 인권의 구조적 모순을 초래한 것은 바로 북한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혹은 정권 교체)를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내놓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진보적 견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부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제재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들은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 평화권과 생존권을 문제를 앞세우면서, 점진적인 개선의 방법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²³⁾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중도-진보의 북한 인권에 대한 주장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3) 그러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존재한다. 즉, 진보 진영에서도 통합진보당 등의 진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제기 자체를 문제삼는 반면, 정의당 등의 진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이러한 입장 차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그 근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북한 인권을 둘러싼 진보·중도·보수의 여론상

구분	보수적 견해	중도적 견해	진보적 견해
입장	적극적 문제제기	문제제기	신중 혹은 유보
상황인식	대단히 열악함	열악함	판단 유보
평가기준	보편성	보편성	상대성
주요원인	북한 정치체제, 경제난	보수·진보 견해 종합	미국의 봉쇄, 경제난
주요관심사	자유권	보수·진보 견해 종합	생존권, 평화
북한인권법	지지	유보	반대
주요개선방안	한국정부 포함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	비판과 지원 병행	국제사회의 건설적 역할, 한국 간접적 접근
지향	북한정권 교체	인권개선	평화공존

* 출처: 서보혁(2007: 184)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보수적 견해는 인권에 대해 자유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에 있으며, 진보적 견해는 사회권 및 연대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대로 북한의 상대주의적 인권관과 그 실현은 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은 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권리의 확보로서 인권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에서 인권은 ‘국가의 법률제도에 의하여 담보되는 권리’이며 ‘인권은 법에 의하여 담보되는 권리, 법적 권리로 되어야 실제적인 권리로 될 수 있’는 것이다(전문길, 2013). 따라서 북한에게 인권은 법·제도를 뒷받침하는 체제의 문제로 인식된다. 북한의 인권관은 이런 의미에서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덧붙여 ‘체제’의 문제로 인권을 인식하며, 따라서 외부의 인권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곧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대응에 대한 격한 반발을 낳고 있는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곧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악순환만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보수진영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정권교체를 상정하는 것은 곧 북한의 격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과거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이 주는 시사점의 하나는 체제 비교의 틀을 벗어나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시키는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 있다(김학성, 2010: 129). 체제의 비교를 통한 접근이 오히려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하겠다. 또한, 중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외부의 강압적 방식보다는 개혁·개방의 심화와 국제 인권 체제와의 상호 작용이 중국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남주, 2010).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양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불행하게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단기간에 봉합되거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이들의 견해는 모두 북한 인권에 대한 ‘근본주의’적 인식과 해법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4. 결론

최근 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까지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14/02/18). 보고서를 근거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국교를 단절한다고 선언했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²⁴⁾ 보고서의 지적처럼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24)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및 국제 앰네스티, 뉴질랜드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언론도 이를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서방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부정할 뿐 아니라,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도 반대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북한을 실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14/02/18일; 14/02/19).

문제이다. 통일의 과정이 보편적인 인권의 실현과정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 한반도 차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로 시야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보편성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현실에 대한 고려 없는 보편주의의 절대화로 귀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것은 인권의 보편성이 선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인류의 투쟁을 통해 획득된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권은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온 인권개념과 제도는 결국 일정한 문화권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²⁵⁾ 이러한 지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데서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라는 지향성을 굳건히 하되, 남북한이 처한 역사적 맥락(분단, 정전체제, 북미적대관계 등)과 북한 내 인권, 탈북자 인권,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포함한 범주적 맥락 등을 고려한 현실 적합한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없는 북한 인권 문제의 대상화는 실효성의 한계만이 아니라 냉전시기의 ‘인권의 정치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실현 과정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 역시 수 십년 아니 수 백년의 시간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인권’을 향유할 수 있었듯이, 지금 획득된 인권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북한(혹은 제3세계)에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인권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5)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 상대주의’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위의 주장은 정영선(2000: 12)을 참조하라. 이런 점에서 이샤이가 지적하는 ‘문화 상대주의는 보편적인 정의론이 제시하는 총체적인 인권관에 대한 정당한 대안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권담론을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에 뒤따르곤 하는 반복되는 부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되새겨보아야 할 지점이다(이샤이, 2008: 47). 또한 상대주의자들이 지적하는 ‘인권/문화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인권운동가들은 어떤 독재정권이든 미국, 유럽, 또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친구이든 또는 그들의 적국이든 간에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이샤이, 2008: 596).

우리에게 인권은 통일의 중요한 가치이며, 더 나은 한반도의 인권 상황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통일을 보편규범의 전 한반도 차원에서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인권 영역에서도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적 두 개념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 인권을 구체적인 맥락과 요구에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조효제가 지적한 ‘문화간 대화, 문화 내 성찰을 통한 확장전략’이 요구된다.²⁶⁾ 바로 이러한 열린 자세로부터 남북한 인권 대립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 지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닫힌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문제와 ‘통일 인권’을 찾아가는 열린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적합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북한 인권과 인권의 통일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실현 과정으로 통일을 추구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인권과 더불어 남북한의 인도적 현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내고, 남북 모두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그리고 한반도 인권)의 증진도 좀 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6) 조효제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문화 내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없이는 인권에 대한 보편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화간 대화와 문화 내 성찰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조효제, 2012:: 213). 또한,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자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도 상대주의가 심정적으로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고는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외부에서 거만하게 강요하면 인간은 반발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문화간 대화와 내적 성찰을 강조하는 이유도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내부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효제, 2012: 227).

【참고문헌】

- 구갑우·정택상. 2007.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정책의 조건성.”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분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갑우·최완규. 2011. “북한의 동북아 지역정책.” 이수훈 엮음.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파주: 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엔북한인권결의안(2003-201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국신·김연수·서보혁. 2010.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김비환. 2010. “현대 인권담론의 쟁점과 전망.”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서울: 이학사.
- 김수암. 2006. “문화상대주의, 주권원칙과 북한 인권.” 『세계정치 5』. 서울: 인간사랑.
- 김정일. 1997.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3.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12.21.).”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8.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학성. 2010.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윤영관·김수암 엮음.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파주: 한울.
- 나종일 편역. 2012.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 파주: 한울.
- 리광혁, 2010.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궤변의 반동적 본질,” 『정치법률연구』 3호.
- 리현도. 2010.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로동신문』(3월 21일).
- 린 헌트 저. 전진성 옮김. 2009. 『인권의 발명』. 서울: 돌베개.
- 민경배. 2001. “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 『공백학연구』 제3권 1호.
- 백범석, 2014.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권기구 설립의 전망과 과제,” 서강대학교 SSK 전문가 초청간담회 발표자료(2014.4.11.)
- 서보혁. 2005. “행위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북한연구학회보』 9권 1호.
- 서보혁. 2006. “미·북간 인권 분쟁의 이념적 기초: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 연구』 제2집 1호.
- 서보혁. 2007. 『북한인권:이론.실제.정책』. 파주: 한울.

- 서보혁. 2009.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역사비평』 2009년 가을호.
- 서보혁. 2012. “한반도 통일과 보편적 인권의 실현.” 지구촌평화연구소, 『통일한반도를 향한 꿈』. 서울: 태봉.
- 승재승·로영. 1995. “참다운 인권옹호를 위하여.” 『로동신문』(6월 24일).
- 오수용. 2010. “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 『정치사상연구』 16집 2호.
- 오영달. 2010.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로크와 루소 사상의 비교와 북한 인권.”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서울: 이학사.
- 원충국. 2007.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원천.” 『정치법률연구』 3호.
- 유홍립. 2010. “현대 자유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서울: 이학사.
- 이근관. 2006. “국제적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에 대한 고찰.” 『인권평론』 창간호.
- 이남주. 2010. “중국에서 인권규범 확산과 한계.” 윤영관·김수암 엮음,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파주.
- 이무철. 2011.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현대북한연구』 14권 1호.
- 이상훈. 2005. “인권 패러다임과 사회 동학.” 『시대와 철학』 16권 3호.
- 이정은. “해방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1945-1970년대 초),”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8
- 이샤이 미셸린 저. 조효제 옮김. 2008.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 장은주. 2010. 『인권의 철학』. 서울: 새물결.
- 잭 도널리 저. 박정원 옮김. 2002. 『인권과 국제정치』. 서울: 2002.
- 정근식 외. 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서울: 경인문화사.
- 정영선. 2000.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 권리 주체의 재인식과 ‘상대적 보편성’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6집.
- 정태욱. 2001.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민주법학』 20호.
- 정태욱. 2005.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협력적 인권 개입을 위해서.” 『영남법학』 11권 2호.
- 조택범. 2009. “제국주의의 반동적 인권 공세를 깃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10월 28일).
- 조효제. 2012.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커스틴 쉘라스 저. 오승훈 옮김. 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서울: 은행나무.
- 편집국. 2007. “제국주의 인권 공세를 단호히 깃부시자.” 『로동신문』(8월 17일).
- Lim, Hyun-Chin & Chung, Young Chul. 2006. “The Political and Human Rights Issues

-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9, No. 1.
- Schwarz, Rolf. 2004. “The Paradox of Sovereignty, Regime Type and Human Rights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8, No.2, Summer.
- Uvin, Peter. 200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Bloomfield: Kumarian Press.
-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ienna 12-25, June.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말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연합뉴스』 2014년 2월 18일자/ 2월 19일자.

투고일: 2014.03.05.	심사일: 2014.04.23.	게재확정일: 2014.04.23.
------------------	------------------	--------------------

【ABSTRACT】

The History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Chung, Young Chul | Sogang University

Sonn, Ho Chul | Sogang University

In cold-war era, Human Rights were the means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Since the collapse of the col war, Human Rights have been consolidated as the universal values of the mankind.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s the history of the dispute between universalism and relativism, and today the agenda of Human Rights is enlarging.

Nowaday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e one of important issues around the world. The Attention and involvemen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needed, but it may have danger to result the absolutism of human Rights if we evaluat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 only universal standard. In addition, if we consider that we are now enjoying the Human Rights through the long continuous efforts to achieve Human Rights, it will be ‘Violence of Human Rights’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evlauated uniformly with the current standard of Human Rights we achieved already. Above all things, reality adaptability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needed. Therefore, it is needed that we put our heads together to find a solution on the human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Human Rights(or Korea Peninsular Human Rights) will be done constructively and peacefully.

Key Words | Human Rights, universalism, relativism, North Korean Human Rights, Korea peninsular Human Rights